중개회사 선정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상장주식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위탁하는 중개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부통제기준 제3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중개업자의 선정

제3조(선정원칙) ①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중개회사 평가)회사는 중개회사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에 따른 중개회사별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4. 리서치, 세미나 등의 조사분석 서비스와 지원 서비스

제5조(중개회사의 평가, 선정 절차) ①운용본부 소속의 펀드매니저와 운용지원팀의 주문담당책임자는 중개회사별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고, 평가한 합산결과를 기초로 운용본부 담당자는 거래중개회사를 선정한다.
②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는 매분기별로 하며, 운용본부 담당자는 평가된 결과를 기초로 선정된 중개회사를 매분기 운용지원팀의 주문담당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용지원팀의 주문담당책임자는 평가된 결과를 기초로 선정된 중개회사에 다음 분기의 매매체결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6조(중개회사별 배분계획 수립) ①상장주식 거래중개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주문집행능력, 중개수수료율 등의 각 세부항목으로 하고 그룹별로 구분하여 그룹별 배분한도를 정할 수 있다. (별첨 1)
②운용본부의 펀드매니저, 운용지원팀의 주문책임담당자는 각 항목을 평가하고 운용본부 담당자는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거래중개회사를 선정하며 그 주기는 분기별로 한다.

제7조(매매체결업무의 위탁) ①운용지원팀의 주문담당책임자는 수립된 배분계획에 따라 매매체결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운용지원팀의 주문담당책임자는 매매체결업무를 중개회사의 본점(법인영업 전담부서 및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야 하며, 지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점검) ① 운용본부 담당자는 중개회사별 평가결과와 배분계획을 매분기 준법감시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용지원팀의 주문담당책임자는 매분기 중개회사의 배분계획과 위탁매매 배분결과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매매체결업무 수수료) ①중개회사에게 지급하는 매매체결업무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매매체결업무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 없이 중개회사 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적용의 제외)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배분계획과 다르게 위탁할 수 있다.

1.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그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하여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함)
2. 거래자산, 운용전략 또는 매매방법이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예: 현선물, 스왑선물 등의 포지션을 이용한 차익거래 등의 구조화된 거래 시 적용 제외)
3. Block Trading을 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 전체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각 집합투자기구의 해당 Prime-Broker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파생상품, 운용전략 등)가 차별화되어 운용에 기여하는 경우
6. 공모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7. 프로그램주식매매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8. 발행시장에서 국고채가 아닌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9. 기업분석 및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운용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운용본부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11조(기록 및 유지) 자산운용본부는 중개회사 평가 및 배분계획, 배분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